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 - 7 호

「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8월 2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지원 시책 및 범위(안 제3조)

다.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